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

전남사랑 愛 서포터즈

신청하기

농수축산물 구매 촉진 및 관광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등을 함께 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를 검색해 보세요

가입대상	**전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며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혜택	**전남사랑도민증 모바일 발급 예정**(할인가맹점 150여 개소) ※ 농수축산물·숙박·레저·관광지 등 할인혜택 제공
가입방법	**온라인 및 서면 신청**(전라남도 누리집 내 신청페이지)
문 의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출향도민팀 061-286-77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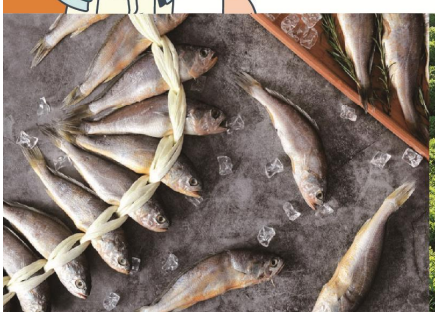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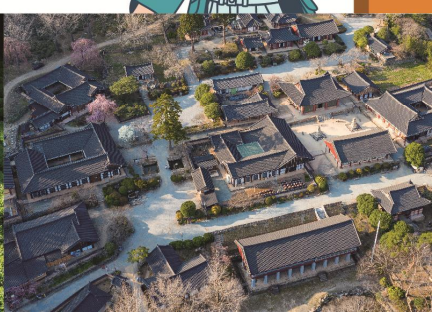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457-06

1000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낳다 전라도천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2023년 2월(제364호)

생활에 유익한 법 무 상 식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Ⅰ 새로운 판례

1. 보험금 ····· 7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9
3. 모욕 ····· 10
4.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12
5.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 14

Ⅱ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1.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
2.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 20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23
4.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27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31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1.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37
2.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 41
3.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46

Ⅳ 생활법률 상담사례

1. 관심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 54
2.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54
3.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55
4.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55
5.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 56

Ⅴ 법무단신

1.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 57
2.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 59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 61
4. ‘주사 놓다 환자 감염 혐의’ 의사에 벌금형 원심 파기 ····· 63
5.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64
6.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 ····· 66

Ⅵ 최근 개정 시행법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 68

Ⅶ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다문화가족 ····· 79
· Multicultural Families ····· 85
· 多元文化家庭 ····· 92
· Gia đình đa văh hó ····· 96

Ⅷ 법제처 법나들이

· 재벌집 회장님 ····· 102

Ⅰ. 새로운 판례

1 보험금

*** 대법원 2022다272169**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 ◇

이 사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 피고 2(보험회사)가 망인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데, 그 보험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박승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함(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 선원인 망인은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장에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 2021도16198**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로 본 원심의 당부 ◇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연혁,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學院)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3 모욕

*** 대법원 2022도4719**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에서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

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든 원심의 설시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의 무죄판단을 수긍하였음

4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대법원 2022두57695**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甲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였음.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甲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정상근무를 요구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까지 모두 甲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위 법리 및 아래 ①~⑤의 사정들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음. ①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하였으며,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② 관리팀장이 대동한 관리상무는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③ 특히 甲회사의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甲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甲회사 차원의

결단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 ④ 실제로 원고가 3개월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甲회사의 버스 운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다가 원고가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에야 정상근무를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의 위 언행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노무수령 거부를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⑤ 해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5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 대법원 2020두4372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사방식 ◇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 상급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위 지침의 법적 성격을 법규명령으로 전제한 다음, 그 내용을 처분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마.는 '기반시설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1)항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항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은 도로에의 접속 및 도로확보기준에 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등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 5,000㎡ 미만은 4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신청이 '진입도로의 폭이 4m 이상일 것'에 미달한 결과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도로에 관한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및 앞서 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참조).

☞ 원심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지침 내용을 처분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설시에 적절치 않은 점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Ⅱ.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사례1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신고관청(각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분양자"라 함)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이라 함)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업주체(분양자)(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배우자가 분양권 지분 이전(移轉)에 관한 계약(이하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 함)(각주: 분양권 지분 이전 외에 부동산의 총분양가격 등 최초 부동산 분양계약의 다른 내용에는 변경을 가하지 않는 계약임을 전제함.)을 체결한 경우,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거래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하나로 「주택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이후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연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주체인 "거래당사자"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함)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 제1호에서는 신고사항으로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나목), 실제 거래가격(마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 등 유상계약일 것을 전제로(각주: 「민법」 제563조부터 567조까지 및 법제처 2014. 4. 2. 회신 13-0599 해석례 참조) 구체적인 신고대상 계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유상계약이 아닌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하면서 그 자체 거래대금이 별로도 새롭게 정해진바 없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9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 및 제3조에서 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만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이 부동산의 주요 거래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거래가격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제정하면서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 등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각주: 2015. 10. 13. 의안번호 제1917151호로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 최초의 부동산 분양계약 이후 그 분양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분양계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함)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등의 지분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부동산등을 이전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보아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

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⑦ (생 략)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④·⑤ (생 략)

사례2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질의요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증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본문),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그 위임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서는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증축 부분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회 답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 유

「도로법」 제40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

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바(단서), 같은 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영역은 “접도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40조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취지는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고속교통으로 인한 위험방지 측면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구역을 설정하고, 도로 손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각주: 2003. 11. 8. 의안번호 제162910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 밖에 위치해 있다면 그 부분은 도로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일응 도로교통과 관련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건축물 증축 부분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속하는 증축 부분까지 포함된 건축물 증축 부분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로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와 조화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례 참조), 만약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속하는 증축 부분까지 포함된 건축물 증축 부분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증축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 관계 법령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생 략)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 13. (생 략)

사례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등 관련)

질의요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안내 또는 공지(이하 "보상금공지등"이라 함)가 있은 연도(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안내 자료의 배포기한인 1월 31일이 속한 연도를 말하며, 이하 "보상금공지연도"라 함)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지(각주: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공지등이 최초로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공지등을 하여야 하며(제2항), 보상금공지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할 시장등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제6항).

그리고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및 보상금 신청 안내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공지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상금공지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하 "군소음"이라 함)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각주: 2019. 10. 30. 의안번호 제2023250호로 발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로서,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6항),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실제 보상금 지급액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공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각주: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고 규정하여 보상금 지급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소음보상법령에서는 군소음 피해의 보상에 대해 그 대상과 기준을 특정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피해 배상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개별·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대

신 군소음보상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그 피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상금 신청 관련 규정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보상금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 연도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원칙적인 신청기간을 해당 군소음이 발생한 연도와 관련한 보상금공지가 있은 날부터 해당 군소음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의 다음 연도 같은 기간 동안 추가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하면 보상금 지급 신청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함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게 되고, 이렇게 확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에서 5년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보상금 신청기간과 추가 신청기간이 모두 경과한 것을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처럼 해석하여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하면 보상금 신청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군소음보상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생 략)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생 략)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례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각주: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각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법인인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 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같은 항을 비롯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사업주를 포함시킨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항의 입법취지는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자와 똑같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2013. 2. 12. 의안번호 제1903683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여기서의 "대표자"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각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이하 같음.)에 관한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3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포함한 해당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상급자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사업주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는 법인 자체이지 대표이사가 아니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등 다른 규정에서 사용된 "사업주"라는 용어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남녀평등고용법 제13조제2항은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와 표현을 달리한 것에 상급자에 해당하는 특정인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각주: 2013. 2. 12. 의안번호 제1903683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는 결국 대표이사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규정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된 "사업주"라는 용어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사용된 "사업주"라는 용어를 다르게 해석·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생 략)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각주: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하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이라 함)의 6층 이상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를 전제함.)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회 답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6층 이상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면서 거실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제64조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67 참조)되므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인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총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0. 4. 21. 회신 20-0025 해석례 참조),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거실의 면적에 산입하여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의 "대피공간"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거실"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거실의 사용목적으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등의 개념 또는 사용목적별 구체적인 기준 등 거실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인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의 의미(각주: 거주: 주거(住居)/ 집무: 사무를 행함/ 작업: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 일을 함/ 집회: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오락: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 따른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사용자가 일정 시간 연속적으로 머물며 주거(住居), 사무, 근무, 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대피공간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시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용도는 같은 호에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각주: 소방시설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참조), 같은 세부 기준에 따르면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사용형태가 유사하므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

택 관계 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각주: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9호 나목 참조), 같은 항에 따르면 공동주택(각주: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발코니(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므로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대피공간 설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건축법령상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어(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비고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호 참조) 공동주택과는 달리 세대 내부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하 "발코니등설치기준"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대피공간"은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이라 하더라도 거실과는 구분됨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 「건축법」 제64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시 피난의 용도로 설치되는 대피공간이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거실 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결국 명문의 규정 없이 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일정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역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참조.), 만약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세대 내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유사시 피난이라는 목적으로 동일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규모로 공동주택의 세대와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세대 내에 대피공간이 설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및 형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의미함.)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무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 거실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의 위생(채광, 환기 등), 안전 및 방화(마감재료, 직통계단, 옥외피난계단 등)에 관한 각종 규제(각주: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같은 영 제36조), 거실의 채광(같은 영 제5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같은 영 제61조) 참조)의 적용을 달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 세대 내 대피공간의 경우 대피공간으로 설계되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거실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발코니등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대피공간은 대피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대피공간을 거실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지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세대 내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6층 이상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 21. (생 략)

② (생 략)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u>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u>(제5조 본문 관련)

건축물의 용도 \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생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29.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4,59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주택용도 부분 72㎡, 창고용도 부분 3㎡, 비가림시설 9㎡,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1. 11.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며, 인접 토지(○○시 ○○동 ○○○번지, ○○○번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것을 확인하고, 2021 1. 18. 원상복구명령, 2021. 5. 3. 시정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1. 6. 7.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한 후, 2021. 6. 2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754,59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29.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4,59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2016. 3. 11.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할 당시 전 소유자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나 오래전에 건축된 것이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인근 주택을 매수한 자가 이 사건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한 후 2년 전 직접 중고 판넬을 고정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이 사건 건축물에 어떠한 변형을 가한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은 근거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 연도를 주택용도 부분은 1973년, 창고용도 부분은 2014년, 비가림시설은 2018년으로 특정하였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주택용도 부분이 1973년에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3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철거를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감정에 맞지 않으며, 불법행위자가 따로 있음에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철거를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5) 피청구인이 불법이라고 하는 비가림시설 또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된 건축물인 주택용도 부분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6) 이 사건 건축물의 주택용도 부분이 1973년도에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대법원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판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1)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납세자로 되어있는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을 참고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주택용도 부분의 건축 연도를 1973년으로 특정하였고, 창고용도 부분과 비가림시설은 항공사진을 통해 건축 연도를 각 2014년, 2018년으로 특정하였다. 특히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축 연도가 오래될수록 이행강제금이 적게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연도로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연도인 1973년은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구인이 직접 설치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3) 불법 건축되고 38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가능하며, 직접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주택용도 부분과 창고용도 부분은 위반행위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감경하였다.
4) 비가림 시설은 기존 담장 등에 올려놓고 이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건축물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 증축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소유한 청구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2008. 3. 21. 전부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8974호) 부칙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구)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한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문언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을 따라야 함이 명백하다.
7) 또한,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1992년 이전에 건축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례(서울행심 2012-6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서도 건축이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1992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 지침 통보(전라남도 행복마을과-5993, 2010. 4. 23.)에서도 2008. 3. 21. 전부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8974호) 부칙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는 실효되었으므로 위반 시점과 상관없이 2008. 3. 21. 이후 시정명령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1992년 이전에

건축된 위반 건축물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8)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고 있으며, '처마, 차양, 부연' 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붕이 내밀어진 부분이나 처마 끝이나 창문 바깥쪽에 덧붙이는 것 등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기둥이나 벽으로 지지되거나 둘러싸이지 않고 외벽면에 돌출되어 설치된 부분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라 할 것이다.

9) 하지만 이 사건 건축물의 비가림시설을 살펴보면, 비록 기존 주택과 창고 벽면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벽과 지붕이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는 명확한 건축물이라 할 것이며, 그 형태나 구조가 '처마, 차양, 부연' 등과 구분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10) 아울러, 청구인은 마치 차양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의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건축법을 잘못 이해함에서 온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1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비가림시설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건물과 합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위반 건축물의 구조, 용도, 건축시기(경과연수)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라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5. 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산 15-4번지 및 산 15-10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중 산 15-4번지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현재까지, 산15-10번지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2020. 3. 26.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라고 주장하며, 2019년 누락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하여 ○○시는 2021. 3. 29. ○○○유역환경청에 소급 승인 요청을 하였고, ○○○유역환경청은 2021. 4. 28. ○○시에 소급 승인 불가 검토 의견을 알렸다. 피청구인은 2021. 5. 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관련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 결정하였다는 검토 결과를 알림과 동시에 소급 지급 제외 및 2021년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제외처분을 사전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17.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시는 2021. 5. 27. ○○○유역환경청에 협의 검토 요청을 하였고, ○○○유역환경청은 2021. 8. 9. ○○시에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 검토의견을 알렸다. 청구인은 2021. 8.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5. 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 구 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유역환경청에서 주장하는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게 되는 한계로 인하여 아직 이 사건 신청지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청구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막연하게 소송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피청구인

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시는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관련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 결정하였다는 검토 결과를 받은 후에 피청구인이 2021. 5. 10. 청구인에게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도록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2021. 5. 17.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4. 관계 법령

1) 「행정절차법」제21조

2)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면 ○○리 산 15-4번지 및 산 15-10번지 중 산 15-4번지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현재까지, 산15-10번지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2020. 3. 26.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섬진강수계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라고 주장하며, 2019년 누락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하여 ○○시는 2021. 3. 29. ○○○유역환경청에 소급 승인 요청을 하였고, ○○○유역환경

청은 2021. 4. 28. ○○시에 소급 승인 불가 검토 의견을 알렸다.

3) 피청구인은 2021. 5. 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관련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 결정하였다는 검토 결과를 알림과 동시에 소급 지급 제외 및 2021년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제외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17.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시는 2021. 5. 27. ○○○유역환경청에 협의 검토 요청을 하였고, ○○○유역환경청은 2021. 8. 9. ○○시에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 검토 의견을 알렸다.

5) 청구인은 2021. 8.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먼저, 청구인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의 피청구인을 ○○시 ○○면장으로 경정한다.

2) 관계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5. 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관련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부적격 결정하였다는 검토 결과를 알림과 동시에 소급 지급 제외 및 2021년도 직접 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제외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대법원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통지를 한 것일 뿐, 그것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7. 5.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2021.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답, 계획관리지역,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각 90㎾(총 180㎾)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2021. 4.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 2,227㎡)를 신청하였다.

○○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는 2021. 6. 23.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인근 토지 이용 실태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사유로 '부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7. 5. 청구인들에게 ○○군계획위원회 부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저촉을 사유로 들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2021. 8. 13.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7. 5.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 구 인

1) 피청구인이 보완 요구한 사항 중 사업추진 전 해당 지역주민(밭 경작자, ○○○, 마을이장)의 의견수렴을 요구하면서 "○○○○"라는 불허가 사유에 적시하지 않았으나 비공개적 사유로 추가하였으며, ○○군 ○○팀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계획위원들에게 태양광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이 접수된 사실을 알렸으며, ○○○○ 때문에 청구인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허가 사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미보완을 이유로 불허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개발행위 청구의 주장에 대하여 ○○리 1리, 2리가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정지역이 아니고 주택지에서 가시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막연한 '청정지역'이라는 불확정개념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도 없이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다.

3) 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기준에 맞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용역사 (주)○○○○은 태양광 구조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만족하며 안전하다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군수의 발전사업허가증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토지매입 및 ㈜○○○○과 용역계약 등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어긋한 것이다.

4) ○○군 ○○면 ○○리 ○○번지, ○○면 ○○리 ○○번지, ○○면 ○○리 ○○번지, ○○면 ○○리 ○○번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 운영 중이나,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인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막연한 추상적인 우려다. 따라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1)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1'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3-1'(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

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위원회 운영 2-7-1. 부문을 인용하면 위원은 심의 시 부문별 심의기준을 준수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1] 개발행위허가 심의 세부기준의 입지의 적정성 검토항목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검토항목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여부 중점심의사항의 검토항목에는 환경·경관·안전의 적정성, 기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 가이드라인 내용에서와 같이 주변 지역과의 조화,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검토하고 심의하고, 위와 같이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청구인들이 신청지의 농경지와 주변의 임야 등 자연경관과 조화롭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계획위원회의 6명의 위원도 공감하고 심의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들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제4장 기타사항 4-1-4(역할 및 범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의한 심의·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아닌 전문지식을 통한 의견제시를 목적으로 함"으로 규정하고 또한 4-1-5(구속력 등)에서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이 이 사건 신청지가 농경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대상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사유로 부결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며, 처분서 내용에 관련 법규와 불허가사유를 작성하여 통보하였기에 청정지역이라는 불확정개념과 증거자료도 없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기준에 맞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용역사 ㈜○○○○은 태양광 구조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만족하며 안전하다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피청구인의 2021. 3. 16. 발전사업허가증(○○ 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토지매입 및 ㈜○○○○과 용역계약 체결 등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어긋한 것이라는 주장은 발전사업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는 별도 허가받아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명시한 바 있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과 용역사 간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②행정청의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그 개인이 그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④행정청이 위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대법원 1997.09.12. 선고 96누18380 판결), 청구인들에게 인근 토지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동의서와 관련하여 공적견해를 표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뢰를 생기게 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대법원은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나 주변이 모두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인근 ○○리 3개 마을의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 ○○호선에서 가시권으로 약 2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의 주변 토지이용실태가 태양광발전시설로서 적절치 않고, 주변 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거나, 조화롭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이 그 재량행사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 신청과 함께 ○○면 ○○리 주민 의견서 제출[문서번호: ○○면-○○(2021. 4. 8.)호]로 ○○○○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한 법률적용을 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 법령

1) 국토계획법 제57조, 제59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57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2021.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각 90㎾(총 180㎾)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들은 2021. 4.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 2,227㎡)를 신청하였다.
3) ○○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는 2021. 6. 23.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인근 토지 이용 실태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사유로 '부결'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21. 7. 5. 청구인들에게 ○○군계획위원회 부결 및 국토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저촉을 사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들은 2021. 8.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2021. 10. 8.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군 관내의 다른 태양광 허가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라는 사유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 여부를 중요한 심의요건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에서 보이고, 자연경관이 보존되어 있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뒤로는 야산, 아래로는 농지가 있고, 지방도 ○○호선에서 신청지까지의 거리는 약 200m로 가시권이며, 인근에는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 협의 의제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3.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고,

라) 주변 지역과 관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은 "①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②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③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 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행정청 재량판단은 공익을 중시하고,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①피청구인이 사업추진 전 해당 지역주민(밭 경작자, ○○○, 마을 이장)의 의견수렴을 요구하였고, ○○○○ 때문에 이 사건 불허가처분 되었으며, ②신청지 주변은 청정지역이 아니고 마을에서 가시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령상 기준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태양광 구조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만족하며 안전하다는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토지매입 및 ㈜○○○○과 용역계약 등을 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으며, ④○○군 ○○면 ○○리 ○○번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 운영중이나,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사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현장검증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대다수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청정지역으로 보이고, 인근 ○○리 3개 마을의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 ○○호선에서 가시권으로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주변 토지이용실태가 태양광발전시설과 잘 어울린다고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경관이나 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위와 같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는 인근 토지 이용 실태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사유로‘부결’하였고, 피청

구인은 ○○군계획위원회 부결 및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위반을 사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행정청의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령상 기준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태양광 구조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만족하며 안전하다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토지 매입 및 용역계약 등을 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신뢰의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④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에 비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 및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Ⅳ. 생활법률 상담사례

1 관심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입지, 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3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5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V. 법무단신

1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22고단2123).

A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해당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 씨와 B 씨의 7살, 6살 두 아들도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 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고,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B 씨 측을 지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주 카니발 사건에서 보듯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더라도 아동학대죄로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2019년 7월 제주도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가해자가 차선변경 시비 끝에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5살, 8살이던 피해자의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였고,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 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 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차주인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 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 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며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 차주 A 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 씨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 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가건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며 지연이자는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6058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부분을 파기자판.

[쟁점]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선에 따른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인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는 임대차 종료일에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건물주 B 씨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신규 임차인 C 씨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B 씨에게 알렸지만 B 씨는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또다른 신규 임차인 D 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총 1억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B 씨에게 통보했지만 B 씨는 D 씨와의 임대차계약도 거절했다.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1억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2심도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7100여만 원으로 낮췄다. 지연손해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B 씨가 A 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다."

4 '주사 놓다 환자 감염 혐의' 의사에 벌금형 원심 파기

주사를 놓다가 환자에게 세균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1163).

A 씨는 2019년 7월 환자 B 씨의 어깨 부위에 이른바 '통증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B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주사를 놓을 때 손이나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5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인 A 단체의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A 단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765).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기부금품 중 1억 8100여만 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A 단체가 홍보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었다는 것이다.

A 단체 재원의 92%를 차지하는 회원 20만 명을 '소속원'으로 인정할 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소속원이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원심은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은 단지 후원자에 지위에 있을 뿐 A 단체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단체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등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 단체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며,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 단체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상고심에서 A 단체와 B 씨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 등 기부금 등록청은 기부금품법이 2006년 개정된 이래 정기후원회원 등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에게 받은 기부금은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에 해당돼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니고, 모집비용은 모금종사자 인건비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왔다.

동천 관계자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 공익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등록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해왔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전국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의 위기를 면하게 됐고, 향후 공익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6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때와 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상습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660).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약 2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검찰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120여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됐다.

재판부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상습성착취

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되는 그 이후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한다"며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개별 범죄행위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행해진 상습범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고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Ⅵ. 최근 개정 시행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어구(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의 방법,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방법 등(안 제76조 및 제77조)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의 유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어구생산업자·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80조 및 별표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해당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함.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가 생산·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의 기록 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제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어구생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다. 어구 및 폐어구·유실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안 제82조)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어구의 생산·유통 및 사용 현황, 폐어구·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수거·처리 및 재활용 현황,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안 제8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기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해당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 제정·개정문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②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③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④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선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7월 28일 당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으로 등록되어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해당 어업의 어장에 한정하여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부속선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

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부속선의 종류 및 척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는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 당시 해당 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속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어선의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건조 또는 개조되었거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 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어선의 경우 그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선 규모가 동일한 어업으로의 전업 또는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미 허가받은 연안안강망, 낭장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연안어업 중 연안안강망어업과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199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체된 어선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어업을 하되,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폐지하고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관청이 새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8 제1호사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제한 및 조건과 같은 허가제한 및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8조(이미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의 어구사용 통수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가 그 어업의 경영안정과 어업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어업의 어구 사용통수를 다섯 통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 선복량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아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후 건조되거나 개조되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근해어업의 어선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2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전에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개조허가를 받아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조·개조된 근해어업의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6일 당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이하 "허가어선·어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허가어선·어구 또는 허가어선·어구를 대체한 어선·어구(제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12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1. 제1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된 어업허가와 관련된 허가어선·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라 허가어선·어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한 자가 해당 허가어선·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

는 경우

3.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어선·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4.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에 따라 허가어선·어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지신고와 동시에 대체한 어선·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적용받는 어선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사업으로 감척되는 경우 그 감척되는 어선에 대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건수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1월 16일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어장구역 표지시설은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4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장구역 표지시설로 본다.

제1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신고서·요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신고서·요청서 등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한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라)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제40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제31조"로 한다.

⑤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7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⑦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1)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⑧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93조제2항"으로 한다.

⑨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2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중 "「수산업법」 제30조"를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호가목"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한다.

⑪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⑫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⑬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1

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4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3호카목3)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다목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⑮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조를 위반하여"를 "「수산업법」 제40조·제43조·제48조·제63조"로 한다.

⑯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로 한다.

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⑱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또는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Ⅶ.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의 개념

▶ "다문화가족"이란?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제1호).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구분	내용
출생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따라 인지(認知)된 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함)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위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3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5호, 2021. 6. 29. 발령, 2022. 1. 1. 시행) 제10조제1호].
- 방송사업자는 위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4항).
- 교육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5항 전단).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2항).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 위 방문교육 비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2022

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6호, 2021. 12. 31. 발령, 2022. 1. 1. 시행)에 따라 차등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4항).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위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2항).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 다국어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 그 밖의 법령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 복권수익금 등에서의 지원

-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 중 일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인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한국생활 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및 외국어 상담 등이 지원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 및 제17조제1항).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을 하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다국어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현황은 여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 (http://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ulticultural Families

◈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ies

What is a multicultural family?

- A multicultural family refers to any of the following families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A family comprising the marriage immigrant and family members with Korean nationality through birth, recognition and naturalization.

· A family comprising persons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rough recognition and naturalization under the "Nationality Act," and persons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through birth, recognition, and naturalization under the "Nationality Act."

※ The provisions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under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lso applies to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who raise children born in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s with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4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mmigrants by marriage

- Immigrants by marriage means any foreign resident in Korea (those who do not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o legally stay in Korea for the purpose of residing in Korea) who had or has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Article 2, subparagraphs 3 and 1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Immigrants by marriage, etc. means persons who obtained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as members of a multicultural family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Overview of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 Master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ust establish a master plan for policies on multicultural families every five years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following prio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3-2, paragraphs 1, 2, and 3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Basic direction-setting for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 Matters concerning development measures in each field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evaluation thereof

· Matters concerning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 Matters concerning promotion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ctivities in all areas including economy, society, and culture

· Matters concerning financial resource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distribution thereof

·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 Provision of Daily Lif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upport

-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nformation related to learning and guidance for children and juveniles), and education for social adapt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enhance their communication skills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untries and cultures of the immigrants by marriage, etc. and receive support for related educatio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In the process of the above education, th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may receive education in various ways, such as through visiting education and distance education, to ensure that all immigrants by marriage, etc. and their spouses and family members have access to educational services regardless of their places of residence and home environment, etc. (Article 6, paragraph 3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Differentiated services may be applied to the above home teaching expenses under the 「Home Teaching Service Expenses and Household Income Standard of 2022」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ndeavor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protect and support immigrants by marriage, etc. who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ndeavor to establish more counseling centers and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ich provide fore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to protect and support immigrants by marriage, etc. who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8, paragraph 3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In the event that immigrants by marriage, etc. terminate a marital relationship due to domestic violenc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ervices to them, such as language

interpretation, legal counseling,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making statements and finding facts, so that they will not be placed at a disadvantage due to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or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legal system and other relevant matters (Article 8, paragraph 4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Medical and Health Support

-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medical services, such as education on nutrition and health, prenatal and postpartum care, and medical examinations, to ensure their healthy living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provide immigrants by marriage, etc. interpretation services when they receive the medical services provided above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and Juveniles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not discriminate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of any multicultural family in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or children and juveniles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et measures in place for educational assistance to children and juvenil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help them to quickly adapt to school life, and children and juvenil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support for extracurricular or after-school education programs (Article 10, paragraph 2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Children and juveniles means persons of age 24 years or young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under 18 years of age are entitled to receive support for preschool care and education services to develop language skills as well as the assistance necessary for

improving their linguistic proficiency, such as learning materials and teaching support in learning of Korean language and the mother tongue of their father or mother who is an immigrant by marriage (Article 10, paragraph 3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Provision of Multilingual Services

- Multilingual services may be received to remove communication barriers facing immigrants by marriage, etc. and to improve accessibility to services provided in relation to the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ticle 1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upport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tipulated in other statutes

- Support to promote the welfar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provide full support to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to promote their welfare and help them lead stable family lives (Article 18-2 of the "Special Act for the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the Prom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 Area").

-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diversity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ndeavor to take measures such as for education, publicity, and correction of unreasonable institutions, etc. to ensure that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in Korea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s history, culture, and institutions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Support with proceeds from lottery ticket sales, etc.

- A part of the proceeds from lottery ticket sales and the lottery fund must be used for projects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Article 23, paragraph 3, subparagraph 3 of the "Lottery Ticket and Lottery Fund

Act”).

※ The web portal for multicultural families, Danuri (http://www.liveinkorea.kr), is managed under the support of the lottery fund to offer information on living in Korea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 well as counseling in foreign language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Task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erforms the following tasks (Article 12(4)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Provision of support programs such as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 Provi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s by marriage, etc.

√ Provision of information on support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motion of such services

√ Affiliation of services with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support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 Provision of job recruiting information and job placement services

√ Provision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upport for victims in multicultural families

√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 Organizations other than those established under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e not permitted to use the nam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r any other similar names. Those found to be

in violation of this provision will be punished by fine of up to 3 million KRW (Article 12-3 and 17,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Regional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Educational programs

-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rovide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gratio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b placement and educational support, individual and family counseling, and other services, which are provided through "collectiv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who visit the center, and "visiting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the center directly.

Various types of support provided through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Provision of everyday living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upport (Article 6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8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Medical and health support (Article 9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Nurture and Education Support for Children and Teenagers (Article 10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Provision of multilingual services (Article 1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多元文化家庭

◈ 多元文化家庭的概念

多元文化家庭的概念

- 何谓“多元文化家庭”？

- “多元文化家庭”是指符合下列任意一项描述的家庭（《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2条第1号）：

· 由结婚移民者与通过《国籍法》规定的出生、认领、归化取得韩国国籍者组成的家庭

· 根据《国籍法》规定，通过认领、归化取得韩国国籍者与通过出生、认领、归化取得韩国国籍者组成的家庭

※ 抚养在与韩国国民的事实婚姻关系中出生之子女的多元文化家庭成员也可以受到《多元文化家庭支援法》规定的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4条）。

- 结婚移民者

- “结婚移民者”是指与韩国国民有过或有婚姻关系的在韩外国人（以在韩居住为目的，在韩合法滞留的非韩国国籍拥有者）（《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2条第3号及第1号）。

- “结婚移民者等”是指多元文化家庭成员中的结婚移民者和获得归化许可者（《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2条第2号）。

◈ 多元文化家庭支援概要

多元文化家庭支援基本计划

- 多元文化家庭支援基本计划

- 为了支援多元文化家庭，女性家族部长官应当与相关中央行政机构长官协商，每五年制定包含下列事项的多元文化家庭政策（《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3条之2第1项、第2项及第3项）。

· 多元文化家庭支援政策的基本方向

· 支援多元文化家庭的各方面发展政策与评估相关事项

· 支援多元文化家庭的制度改善相关事项

· 促进多元文化家庭成员在经济、社会和文化等各领域活动的相关事项

· 支援多元文化家庭的财政来源获取及分配相关事项

· 其他支援多元文化家庭所需的事项

对多元文化家庭的支援

生活信息提供及教育支援

- 多元文化家庭成员可得到在韩生活所需的基本信息（包括对儿童和青少年的学习和生活指导相关的信息）、社会适应教育、职业教育和训练，以及提高语言沟通能力的韩语教育等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6条第1项）。
- 多元文化家庭成员可得到理解结婚移民者等的出身、国家和文化等所需的基本信息以及相关教育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6条第2项）。
- 实施教育过程中，为了避免有结婚移民者等及其配偶、家庭成员因居住地和家庭环境等因素无法得到服务的情况，可通过上门教育或远程教育等多种方法提供教育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6条第3项）。

※ 上述上门教育费用可按照多元文化家庭成员的家庭收入水平、教育类型等《2022年度上门教育服务费用及支援家庭收入标准》分级提供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6条第4项）。

对家庭暴力受害者的保护和支援

- 国家与地方自治团体应当依据《防止家庭暴力及保护受害者等相关法律》努力预防多元文化家庭的家庭暴力事件发生（《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8条第1项）。
- 国家和地方自治团体可为受到伤害的结婚移民者等提供保护和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8条第2项）。
- 为了向受到家庭暴力伤害的结婚移民者等提供保护和支援，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当努力扩充提供外语翻译服务的家庭暴力咨询所和保护设施（《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8条第3项）。
- 结婚移民者等因家庭暴力而结束婚姻关系时，为避免其因语言障碍及缺少相关法律信息处于

不利地位，国家和地方自治团体在意见陈述和事实确认等过程中可提供语言翻译、法律咨询和行政支援等必要服务（《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8条第4项）。

- 医疗及健康管理支援

- 多元文化家庭成员可得到健康生活所需的营养健康相关教育、产前产后助手派遣、体检等医疗服务（《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9条第1项）。
- 对于接受上述医疗服务的结婚移民者等，国家和地方自治团体可提供外语翻译服务（《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9条第2项）。

- 儿童与青少年的保育和教育支援

- 国家和地方自治团体在实施儿童与青少年保育和教育支援时，不得歧视多元文化家庭的儿童和青少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0条第1项）。
- 为了让多元文化家庭的儿童和青少年快速适应学校生活，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当制定教育支援对策，相关机构也可向多元文化家庭的儿童和青少年提供学科以外或课外的教育项目等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0条第2项）。

※“儿童和青少年”是指24岁以下之人（《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2条第3号）。

- 为了向多元文化家庭的未满18岁者提供小学入学前的保育和教育服务，可提供韩语支援、拥有结婚移民者身份的父亲或母亲之母语教育所需的教材支援、学习支援等提高语言能力所需的必要支援（《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0条第3项）。

- 提供多语种服务

- 为了解决多元文化家庭的沟通难问题，保障多元文化家庭成员可接触更多多元文化家庭支援政策规定的服务内容，可提供多语种服务（《多元文化家庭支援法》第11条）。

其他法令规定的多元文化家庭支援制度

- 提高农渔村地区多元文化家庭福利相关支援

- 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通过积极支援提高农渔村地区多元文化家庭的福利，同时帮助其经营安定的家庭生活（《提升农渔业人生活质量及促进农渔村地区开发相关特别法》第18条之2）。

- 增进对多元文化的理解

- 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当努力通过教育、宣传、修正不合理制度或采取其他必要措施来促进

韩国国民和在韩外国人理解和尊重彼此的历史、文化与制度（《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18条）。

■ 彩票收益金等方面的支援

- 彩票收益金和彩票基金的一部分应当用于多元文化家庭支援事业（《彩票及彩票基金法》第23条第3项第3号）。

※ 多元文化家庭门户网站Danuri（http://www.liveinkorea.kr）由彩票基金支持运营，提供在韩生活信息、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信息，以及外语咨询等支援服务。

Gia đình đa văn hóa

◈ Khái niệm gia đình đa văn hóa

▶ Khái niệm gia đình đa văn hóa

■ "Gia đình đa văn hóa" là gì?

- "Gia đình đa văn hóa" là gia đình thuộc một trong các đối tượng sau (Điểm 1 Điều 2,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Gia đình gồm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và ngườ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theo khai sinh, được công nhận và nhập tịch theo Luật Quốc tịch.

· Gia đình gồm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ông qua được công nhận và nhập quốc tịch theo Luật Quốc tịch và ngườ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theo khai sinh, được công nhận và nhập tịch theo Luật Quốc tịch.

※ Với thành v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nuôi con được sinh ra từ quan hệ vợ chồng chưa đăng ký kết hôn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cũng được áp dụng theo quy định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của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Điều 14,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là người nước ngoài ở Hàn Quốc (người chưa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và đang cư trú hợp pháp với mục đích cư trú tại Hàn Quốc) đang trong mối quan hệ kết hôn hay đã từng kết hôn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Điểm 1 và Điểm 3 Điều 2,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là thành viê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là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và người đã nhập quốc tịch Hàn Quốc (Điểm 2 Điều 2,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Kế hoạch cơ bản về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Kế hoạch cơ bản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Bộ trưởng Bộ Gia đình và Bình đẳng giới nhằ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đã thảo luận cùng bộ trưởng các cơ quan hành chính trung ương có liên quan cần phải xây dựng kế hoạch cơ bản 5 năm về Chính sách gia đình đa văn hóa với các hạng mục sau (Khoản 1, Khoản 2 và Khoản 3, Điều 3.2,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Phương hướng cơ bản của chính sách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ạng mục về đánh giá và biện pháp phát triển từng lĩnh vực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ạng mục về cải thiện chế độ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ạng mục về tăng cường hoạt động trong các lĩnh vực kinh tế, xã hội, văn hóa dành cho thành v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 Hạng mục về phân chia và đảm bảo tài chính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ạng mục khác cần thiết trong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Cung cấp thông tin sinh hoạt và hỗ trợ giáo dục

- Thành v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được cung cấp thông tin cơ bản cần thiết khi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gồm thông tin hướng dẫn sinh hoạt và học tập của thiếu nhi, thanh thiếu niên); được giáo dục tiếng Hàn nhằm nâng cao khả năng giao tiếp ngôn ngữ, đào tạo việc làm và giáo dục thích ứng xã hội. (Khoản 1 Điều 6,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Thành v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được cung cấp thông tin cơ bản cần thiết để hiểu rõ về xuất thân, đất nước và văn hóa đối với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được giáo dục về lĩnh vực có liên quan (Khoản 2 Điều 6,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Giáo dục được hỗ trợ theo nhiều hình thức đa dạng tùy theo hoàn cảnh gia đình và nơi cư trú, như giáo dục từ xa, giáo dục tại nhà để không có thành viên nào trong gia đình hay vợ chồng của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cảm thấy bị tách biệt với dịch vụ này (Khoản 3 Điều 6,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hi phí giáo dục nêu trên có thể được hỗ trợ khác nhau theo Chi phí dịch vụ giáo dục năm 2022 và Tiêu chuẩn thu nhập của gia đình được hỗ trợ, chẳng hạn như mức thu nhập hộ gia đình và loại hình giáo dục của các thành viên trong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Khoản 4 Điều 6,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Hỗ trợ và bảo vệ nạn nhân bạo hành gia đình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phải nỗ lực phòng chống bạo hành gia đình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theo Bộ luật phòng chống bạo hành gia đình và bảo vệ nạn nhân (Khoản 1 Điều 8,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hỗ trợ và bảo vệ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bị bạo hành gia đình (Khoản 2 Điều 8,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phải nỗ lực mở rộng xây dựng cơ sở bảo hộ và Trung tâm tư vấn bạo hành gia đình có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 dịch để hỗ trợ và bảo vệ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bị bạo hành gia đình (Khoản 3 Điều 8,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Với trường hợp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quyết định chấm dứt quan hệ hôn nhân do bạo hành gia đình,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có thể cung cấp các dịch vụ cần thiết như hỗ trợ hành chính và tư vấn luật, thông dịch khi xác nhận sự thật và cho lời khai, tường trình để nạn nhân không bị đứng trên lập trường bất lợi do thiếu thông tin về hệ thống pháp luật và khó khăn trong giao tiếp (Khoản 4 Điều 8,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ỗ trợ y tế và chăm sóc sức khỏe

- Thành v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được cung cấp dịch vụ y tế về kiểm tra sức khỏe, người hỗ trợ trước và sau khi sinh, giáo dục về sức khỏe và dinh dưỡng để có thể sống khỏe mạnh (Khoản 1 Điều 9,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 dịch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khi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sử dụng dịch vụ y tế nêu trên (Khoản 2 Điều 9,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ỗ trợ giáo dục, nuôi dạy thiếu nhi và thanh thiếu niên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không được phân biệt đối xử với thiếu nhi, thanh thiếu n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khi thực hiện giáo dục, nuôi dạy thiếu nhi, thanh thiếu niên (Khoản 1 Điều 10,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Để thiếu nhi và thanh thiếu n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hể thích ứng nhanh với sinh hoạt ở trường học,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đang chuẩn bị các phương án hỗ trợ giáo dục. Thiếu nhi và thanh thiếu n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hể nhận hỗ trợ về chương trình giáo dục sau giờ học và ngoài trường học (Khoản 2 Điều 10,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Thiếu nhi và thanh thiếu niên là người dưới 24 tuổi (Điểm 3 Điều 2,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ung cấp hỗ trợ cần thiết để nâng cao khả năng ngôn ngữ như hỗ trợ học tập, hỗ trợ giáo trình dạy tiếng Hàn và tiếng mẹ đẻ của mẹ hay bố là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nhằm giáo dục và nuôi dạy thành viên dưới 18 tuổ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trước khi vào học cấp 1 (Khoản 3 Điều 10,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ung cấp dịch vụ đa ngôn ngữ

- Cung cấp dịch vụ đa ngôn ngữ để tăng cường khả năng tiếp cận các dịch vụ trong chính sách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giải quyết các khó khăn trong giao tiếp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Điều 11,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Chế độ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khác ngoài quy định trong pháp luật

▪ Hỗ trợ tăng phúc lợ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ở khu vực nông thôn và làng chài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phải hỗ trợ tích cực tăng phúc lợi và chăm sóc đời sống ổn đị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ở vùng nông thôn và làng chài (Điều 18.2, Luật xúc tiến phát triển khu vực nông thôn, làng chài và nâng cao chất lượng sống của nông ngư dân).

▪ Nâng cao hiểu biết về gia đình đa văn hóa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cần phải nỗ lực điều chỉnh hay đưa ra xử lý cần thiết khác đối với chế độ bất hợp lý, quảng bá, giáo dục để công dân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có thể hiểu và tôn trọng chế độ, văn hóa và lịch sử lẫn nhau (Điều 18,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Hỗ trợ từ lợi nhuận xổ số

- Một phần lợi nhuận xổ số và quỹ xổ số phải được sử dụng cho công tác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Điểm 3 Khoản 3 Điều 23, Luật về quỹ xổ số và xổ số).

※ Trang web Danuri (http://www.liveinkorea.kr) cổng thông tin gia đình đa văn hóa được vận hành bởi sự hỗ trợ từ quỹ xổ số. Số tiền được hỗ trợ cho thông tin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thông tin về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tư vấn tiếng nước ngoài.

◈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ông việc của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sau (Khoản 4 Điều 12,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Thực hiện các công tác hỗ trợ như tư vấn, giáo dục gia đình đa văn hóa

√ Giáo dục tiếng Hàn cho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 Cung cấp và quảng bá thông tin về dịch vụ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Liên kết dịch vụ với các tổ chức, cơ quan có liên quan đến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ung cấp thông tin và giới thiệu việc làm

√ Hỗ trợ thông dịch, biên dịc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Ngăn chặn bạo lực gia đình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hỗ trợ kết nối cho người bị hại

√ Các công tác khác cần thiết trong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Theo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nếu không phải là trung tâm hỗ trợ thì không được sử dụng tên gọi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hoặc tên gọi tương tự. Nếu vi phạm điều này sẽ bị phạt dưới 3 triệu won (Điều 12.3 và Khoản 1 Điều 17,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ở địa phương

- Chương trình giáo dục

-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hực hiện tư vấn cho gia đình, cá nhân; hỗ trợ giáo dục và tìm việc làm; giáo dục tổng hợp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giáo dục tiếng Hàn v.v. Hình thức hỗ trợ bao gồm "Giáo dục chung" ngay tại trung tâm và "Giáo dục tại nhà" dành cho gia đình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sử dụng trung tâm.

- Các hình thức hỗ trợ của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ung cấp thông tin sinh hoạt và hỗ trợ giáo dục (Điều 6,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ỗ trợ, bảo vệ nạn nhân bạo hành gia đình (Điều 8,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ỗ trợ y tế và chăm sóc sức khỏe (Điều 9,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Hỗ trợ giáo dục, nuôi dạy trẻ em, thanh thiếu niên (Điều 10,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Cung cấp dịch vụ đa ngôn ngữ (Điều 11,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Ⅷ. 법제처 법나들이

재벌집 회장님

저 왔습니다, 할아버지~
도진이 왔나.
꾸벅
정초부터 어쩐 일이고?
새해 첫날이니까 당연히 새해 인사 드리러 왔죠.
새뱃돈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할 일도 없다.
새해라고 해봤자 나이나 한 살 더 먹는 긴데 뭐 인사를 할 게 있다고~
흐흐
근데 말씀과는 다르게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도진아~
이 진양천이가 올해 만 65세가 되는 거 니 아나?
아~ 물론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왜요??
그게 말이다~ 저 대양그룹의 조회장이!
꼿꼿~
경로우대증
임자, 아직도 지하철을 돈 내고 타나?
아무리 재벌이래도 그런 데서 돈이 새면 안 되는데 말이야~

말끝마다 나이 운운하며 나를 우습게 보았단 말이야~
지하철 요금이라도 아껴야 더 부자가 된다는 둥!!
하지만 올해부턴 이 할애비도 지하철 요금 무료가 된단 말씀~!!
이제 그 조회장 앞에서 당당히 무료승차 해야지!
와~ 그거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어떡하죠? 당장은 자격이 안 되시는데.
뭬야?! 와? 와 안되는데?!
!?
나라에서 「노인복지법」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해의 1월 1일이 아니라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거든요.
580103-
등록증
양 천
3-1xxxxxx
연령계산에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출생일을 삽입하여 살아온 기간을 역에 따라 연수(햇수)로 환산한 수가 처음으로 65가 되는 날, 즉 만 65세 생일로 보아야 하니까요.

실망..
이럴 수가… 조회장이랑 지하철 타기로 했는데 우짜면 좋노…!!
그래도 방법은 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1월 3일이 생일이시니까, 이틀 후로 약속을 바꾸시죠!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
옳거니!! 생일만 지나면 되는 거였지!

역시 법대 출신 내 손자~♡ 그럼 당장 약속을 3일날로 바꿔야겠다!
음음
이렇게 할아버지의 나이 문제는 해결 되었지만 도진이도 미처 알지 못한 미래가 있었으니~
어~딜!! 이제 막 65세 된 어린 놈이 자리를 앉으려고 들어!!
노약자석
회장이면 뭐 어쩌라고, 나도 노인대학 회장 출신이여!
떼끼!!
91세
78세
노약자석에 앉기엔 한참 어린 나이였다는 결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에서 "65세"는 나이로서, "나이"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고, "이상(以上)"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뜻하며,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65세 이상"이란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아온 기간을 연(年)으로 환산한 수가 65를 포함하여 그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제157조), 연령계산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규정(제158조)하고 있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제159조), 그 계산은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제160조제1항)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살아온 기간을 역에 따라 연수(年數, 햇수)로 환산한 수가 처음으로 65가 되는 날(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례 참조)인 만 65세 생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

MEMO

MEMO